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 안 변 호	2786
------------	------

김용호 의원 (국민의힘, 용산1)

- 안녕하십니까? 김 용 호 의원입니다.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05월 2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‘만 65세 이상인 사람’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